

[별표 5의2] <개정 1997.4.12>

모의총포의 기준(제13조관련)

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모의총포로 한다.

1.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
2.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·불꽃을 내는 것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·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
 - 가. 발사되는 물체(이하 “탄환”이라 한다)의 크기가 직경 5.7밀리미터 미만인 것
 - 나. 탄환의 무게가 0.2그램을 초과하는 것
 - 다.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(과괴력)가 0.02kgm를 초과하는 것
 - 라.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
 - 마.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